

최대 300만원 지원 소상공인 버림목자금

1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· 지급



중소벤처기업부

지원대상 및 금액

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· 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자금을 지급합니다

1 공통요건

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

개업일 '20년 11월 30일 이전

영업중 신청 당시 휴 · 폐업 상태가 아닐 것

1인 1사업체 여러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

대표자 1인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

지원대상 및 금액



2 집합금지·영업제한

중대본·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, 200만원을 임차료 등으로 직접 지원



집합금지 300만원



영업제한 200만원

- ✓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·지방자치단체가 '20.11.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·영업제한 업종 기준
- ✓ 집합금지·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

지원대상 및 금액



3 일반업종

'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'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급



매출감소 소상공인 100만원

'19년 이전 개업 '20년 매출액이 '19년 매출액 미만

'20년 개업 '20.11.30일 이전 개업하여 9~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, 12월 매출액이 9~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

* '20년 매출액이 '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

지원 제외대상



- ✓ 사행성 업종, 전문직종, 금융·보험 관련 업종 등
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
- ✓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
- ✓ '21.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
- ✓ 비영리기업·단체·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
- ✓ 휴·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
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

*중복수급·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

1차 신속지급



1 지원대상

집합금지

사회적거리두기 2단계

유흥업소 5종(유흥주점 · 단란주점 ·
감성주점 · 헌팅포차 · 콜라텍), 홀덤펍

사회적거리두기 2.5단계

유흥업소 5종, 노래연습장, 실내스탠딩공연장
직접판매홍보관, 실내체육시설, 학원 · 교습소,
홀덤펍

연말연시 특별방역

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및 부대업체, 파티룸
[수도권]밀폐형아이스크린골프장

영업제한

사회적거리두기 2단계

식당 · 카페, 실내체육시설, 노래연습장
실내스탠딩공연장, 직접판매홍보관,
학원 · 교습소

사회적거리두기 2.5단계

식당 · 카페, 이미용업, PC방, 독서실 · 스터디카페
직업훈련기관, 오락실 · 멀티방, 놀이공원 ·
워터파크, 목욕장업, 영화관, 종합소매업 등

연말연시 특별방역

숙박시설

1차 신속지급



1 지원대상

일반업종

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기수급자

신속한 지원을 위해 우선 신청대상에 포함했으나, '20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'19년 매출액 대비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

* 매출액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청 자제 필요

2 신청기간 및 방법

'21.1.11(월) 부터, 홈페이지(버팀목자금.kr)에서 온라인 신청

- 원활한 신청을 위해 1.11(월)~1.12(화)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
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

* 1.11(월)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, 1.12(화)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

** 1.13(수)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

※ 1차 확인지급 및 2차 신속지급, 확인지급은 별도 공고예정

신청 문의



전화 문의

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-3500
(평일 09~18시 운영)

온라인 문의

홈페이지(www.버팀목자금.kr)에서
온라인 채팅 상담
(평일 09~20시 운영)